

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(중위소득 100%)

(단위 : 원)

| 가구원수 | 중위소득100% | 중위소득100% (반올림)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| 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
| 1인 | 2,228,445 | 2,229,000 | 79,018 | 19,780 | - |
| 2인 | 3,682,609 | 3,683,000 | 130,901 | 74,359 | 132,127 |
| 3인 | 4,714,657 | 4,715,000 | 167,876 | 123,611 | 169,859 |
| 4인 | 5,729,913 | 5,730,000 | 205,281 | 156,318 | 208,153 |
| 5인 | 6,695,735 | 6,696,000 | 239,074 | 195,321 | 243,098 |
| 6인 | 7,618,369 | 7,619,000 | 271,291 | 233,543 | 277,236 |
| 7인 | 8,514,994 | 8,515,000 | 304,986 | 271,091 | 314,423 |
| 8인 | 9,411,619 | 9,412,000 | 336,105 | 303,332 | 348,552 |
| 9인 | 10,308,244 | 10,309,000 | 377,299 | 351,294 | 397,093 |
| 10인 | 11,204,869 | 11,205,000 | 422,318 | 400,222 | 453,848 |

※ 10인 초과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: 1인 증가시마다 896,625원씩 증가

- 2024년 기준 중위소득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50호)
- 건강보험료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임.
- 1인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보는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모금회 자체 기준으로 별도 산정함.
 - : 1인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(모금회 자체 기준)
 - 1) 직장가입자= 소득기준 x 7.09% / 2
 - 2) 지역가입자 :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
 - ※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기준임. 따라서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 확인 등을 통해 중위소득 100% 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함.
 - ※ 참고: 1인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 120% 보험료는 24,266원임.